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21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이훈기·김정호·김성환

김용만ㆍ이병진ㆍ김 현

민병덕 • 문진석 • 용혜인

김태선 · 허종식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피해자를 방사선 피폭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문제되었음.

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함.

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・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1조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제4항 중 "출입제한과"를 "출입제한,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 터·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의 이송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・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	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
일부개정법률안	일부개정법률안
제91조(방사선장해방지조치) ①	제91조(방사선장해방지조치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	4
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	
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	
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	<u>출</u>
<u>입제한과</u> 그 밖의 보건상 필요	입제한,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
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
	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
	선비상진료센터 • 방사선비상진
	료기관으로의 이송 및
<u><신 설></u>	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4항
	에 따라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
	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
	으로 보이는 사람을 「원자력
	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
	재 대책법」 제39조제2항에 따
	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・
	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

<신 설>

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조치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